

		종자 및 묘목생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소, 화초, 과수종자</li> <li>- 채소, 화초, 과수묘목</li> <li>- 버섯종균</li> <li>- 접수 및 삽수 묘목</li> <li>- 화초 종근</li> <li>- 벼 모판</li> </ul>
	과실,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	과실작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밤, 호도, 대추</li> <li>- 복숭아, 포도, 감귤</li> <li>- 견과류 채취</li> <li>- 바나나</li> <li>- 키위, 망고스틴</li> <li>- 버찌, 무화과</li> </ul>
		음료용 및 향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추, 생강, 정향, 녹차</li> <li>- 커피, 코코아</li> </ul>
작물 재배업	기타작물재배업	기타작물재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삼, 호프</li> <li>- 섬유작물</li> <li>- 비 및 솔 제조용작물</li> <li>- 유지작물</li> <li>- 조물재료 작물</li> </ul>
	시설작물 재배업	콩나물 재배업	- 콩나물 재배
		채소, 화훼 및 과실작물 재배업	- 시설내에서 채소, 화훼,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
		기타 시설작물 재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버섯 재배</li> <li>- 작물배양 재배</li> <li>- 향신용작물 시설재배</li> <li>- 공예작물 시설재배</li> <li>- 음료용작물 시설재배</li> </ul>

### 3) 개정조문 및 해설

○ 농업소득의 정의 및 과세대상 - 법제197조, 영제147조

농업소득세에서 “농업소득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받